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신규과제 접수 유의사항 안내

(22.2.21.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평가기획팀)

1 연구기관 정보 입력



□ 기업유형 확인



○ 기업유형이 미분류인 경우, 연구개발비(기관부담금, 간접비 등) 적용 불가

- 기관 총괄담당자가 기관의 기본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 기업유형 변경 (IRIS 홈페이지 접속 → 기관 총괄담당자 로그인 → R&D 고객센터 → 기관정보관리 → 기본정보 → 변경신청)

※ IRIS 홈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매뉴얼 **'[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] 기관정보 변경 매뉴얼'** 참고

□ 대표자 입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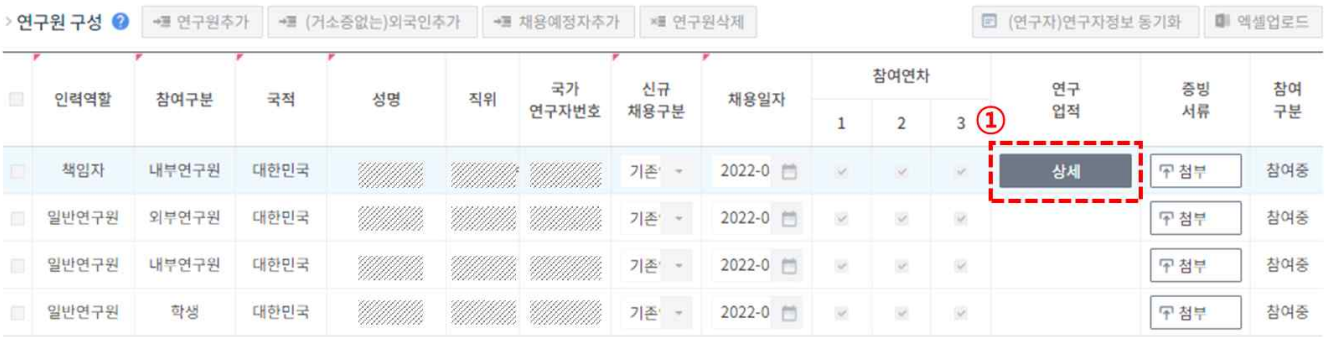


○ 과제접수 시 연구개발기관의 '대표자 정보' 입력은 필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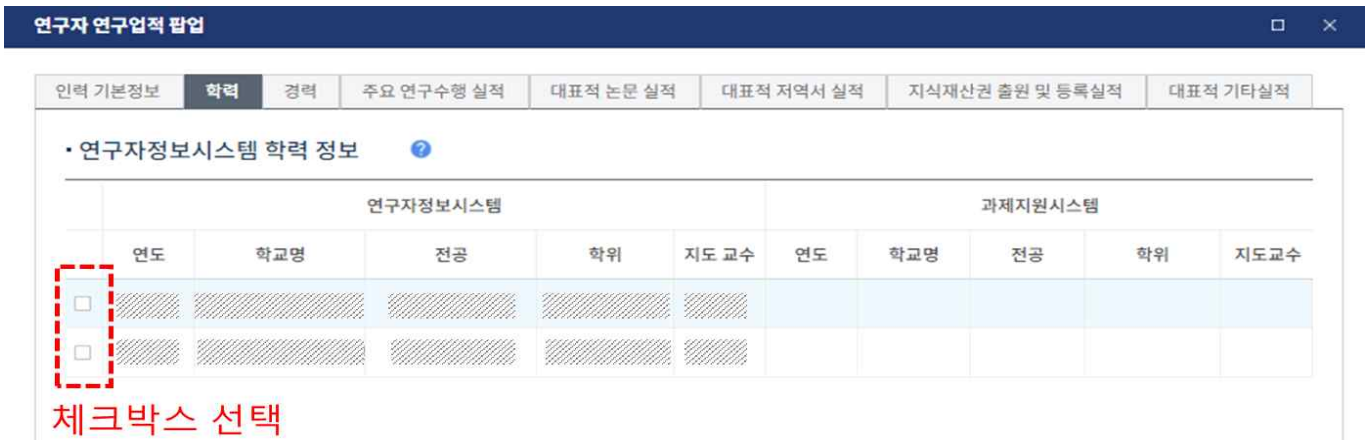
- 기관 대표자의 국가연구자정보가 없는 경우, 아래와 같이 기관 대표자의 IRIS 회원가입 진행
- IRIS 홈페이지 접속 → ② IRIS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③ NRI 접속 및 연구자 기본정보 등록(국가연구자전환)

□ 책임자 연구업적

① 책임자 연구업적 상세 버튼 클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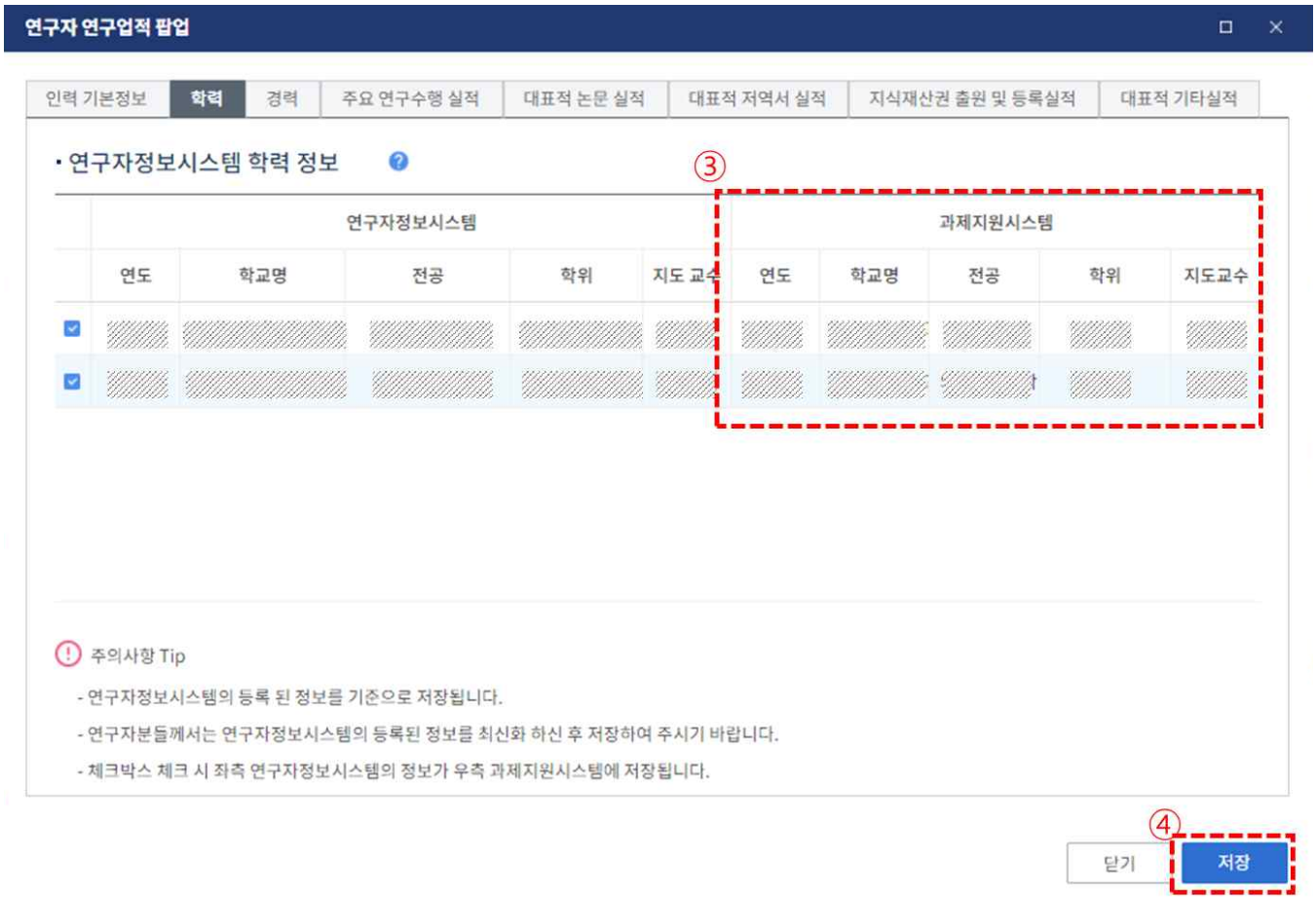
② 연구자 연구업적 팝업 - 연구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클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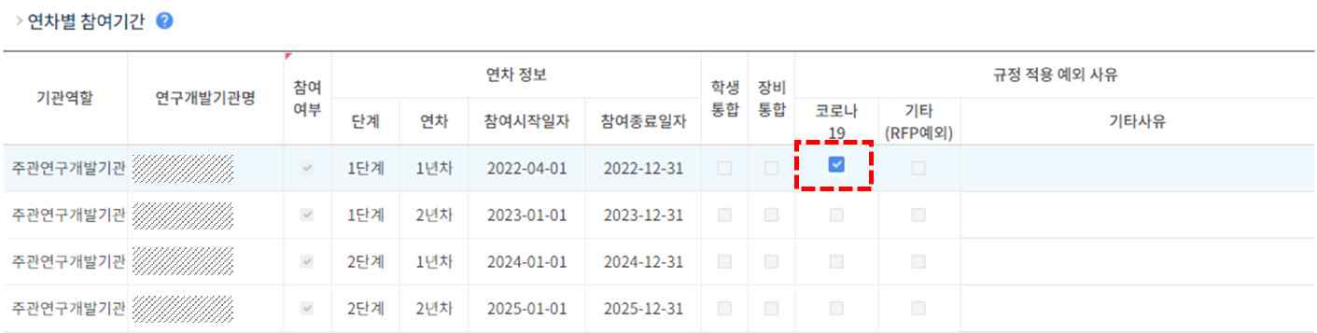
③ 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선택된 정보가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

④ 저장(연구자 학력, 경력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업적 체크*)

* 학력, 경력은 필수값으로 과제지원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, 최종제출 불가



□ 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른 기관부담금 감면



○ '감염병(코로나) 대응 지침'에 따라 연구개발비 중 기업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중이 완화되는 과제의 경우, 2022년만 적용

- 해당 기업 유형 : 중견 또는 중소기업
- 접수 시 입력 방법 : 연구개발계획서 > 연구기관> 연차별 참여기간 > [규정 적용 예외 사유(코로나 19)] 1 단계 1 년차에만 체크

2 연구개발비 입력



□ 재원별 연구개발비 구성

○ 영리기업의 경우 1년차(2022년도)만 '감염병(코로나) 대응 지침'에 따라 연구개발비 중 기업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중이 완화

※ 중소기업 예시

- 1단계 1년차(2022년도)

: 정부지원금 80% /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(현금) 10% (현물) 90%

- 1단계 2년차 이후(2023년도 이후)

: 정부지원금 75% /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(현금) 10% (현물) 90%



○ 비영리기업의 경우, 정부지원금 100%



□ 비목별 연구비 구성

○ 연구수당 계상기준금액: 미지급 인건비 총액을 기재

○ 연구수당(최대액) = '인건비(현물 계상금액을 포함하되, 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)+학생인건비+미지급 인건비'의 20% 이내



비목별 연구비 구성 (단위 : 천원)

단계	연차	기관 역할	연구개발기관명	비목	세목	현금	현물	소계	연구수당 계상기준금액	비율
단계없는	1년차	공동연구	순천향대학교산학협	직접비	인건비		0			
					학생인건비		0		0	
					통합 학생인건비		0		0	
					연구시설.장비비		0		0	
					통합 연구시설.장비비	0	0	0	0	0.00
					연구재료비		0		0	
					연구개발부담비	0	0	0	0	0.00
					국제공동연구개발비	0	0	0	0	0.00
					위탁연구개발비	0	0	0	0	0.00
					연구활동비		0		0	
					연구수당		0		0	
				간접비	간접비		0		0	
비목별 연구비(B)							0			

3 기타

□ 매뉴얼 안내

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- 온라인 매뉴얼

게시번호	제목
2	[IRIS R&D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
19	[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] 기관총괄 담당자 매뉴얼
20	[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]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
21	[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]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매뉴얼
22	[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] 기관정보 변경 매뉴얼
23	[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] 기관대표자 및 기관담당자 등록 매뉴얼